

2000. 7. 29(토)  
제63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심 사 보 고 서

산 업 도 시 위 원 회

##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당초안) : 2000. 7. 19 제천시장
- 나. 당초안 상정일자 : 2000. 7. 26
- 다. 수정안 성정일자 : 2000. 7.26(제63회임시회제1차산업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제정안)

- 도로법개정(98. 2. 8)으로 도로에 마을·주유소·휴게소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 등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 그 허가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내 도로의 특성을 감안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 안전을 확보함에 있음

#### 나. 수정이유

제정조례안 제3조 1항 조문중 “또는 법시행령 제29조 4항에서 정하는 도로 (이하 “도로”라고 한다.)” 까지 포함할 경우 일반 도로변 토지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어 본문구를 삭제코자함.

#### 다. 주요내용 (제정안)

- 적용범위 :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선 이상으로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
- 연결 허가 금지 구간 : 소통장애 및 커브구간등
- 연결도로의 설치기준등 : 구체적으로 규정

#### 라. 수정주요골자

조례안 제3조중 “또는 법시행령 제29조의 4에서 정하는 도로 (이하 “도로”라고 한다.)” 문구를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법 적 검 토 】

- 도로법 제54조의 6 제2항을 보면
  -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항에서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고, 기타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행정절차법에 의거
  - 20일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 【 행 정 적 검 토 】

- 조례 제6조(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 4호를 보면
  - 터널·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의 구간은 연결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240m 이내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충청도 조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제204호) 제6조 4호에서 "500m이내의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1) 제천시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 적용범위를 제천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중 자동차 전용도로만 이라고 해도 될 사항을 법 시행령 제29조의 4항에서 정하는 도로라고 조문을 더 집어 넣은 이유는? (민경환 위원)
- 2) 현재 본 조례안이 자동차 전용도로외에는 적용을 안할건지 그렇다면 굳이 제3조 적용범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29조 4에서 정하는 도로라고 이중으로 규정한 이유는? (민경환 위원)
- 3) 일반국도가 되든 지방도가 되든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만 본 조례안을 적용한다면 굳이 제3조 적용범위에서 또는 법 시행령 제29조 4를 이중으로 규정할 이유가 있는지? (민경환 위원)
- 4) 본 조례안 적용범위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자동차 전용도로 라고만 하면 안되는지? (민경환 위원)
- 5)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있어서 곡선 반경이 크면 허가 조건이 되는지? 또한 경사가 급할 경우에는 시내 구간에는 주로 평지가 되는지? (이재환 위원)
- 6) 지금 6조 4항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기 때문에도 조례와 달리 적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제가 들어보기로는 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주변에 주유소, 휴게소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조항 때문에 허가를 불허할 사항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 나. 답변요지 (건설과장 이종식)

-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중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건교부에서 조례 예시가 시달된대로 도 조례가 나와 있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 3) 법 시행령 29조의 4에서도 들어간 내용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요건을 갖춰서 지정했을 경우 국도·지방도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5) 허가조건이 되며, 평지는 5%이상일 경우와 산지에는 8%이상일 경우에는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6) 허가가 난 구간이 500m 바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 제천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적용범위 조문중에 “또는 법시행령 제29조의 4에서 정하는 도로 (이하 “도로”라고 한다)” 라는 부분을 삭제 수정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 (민경환 위원)
- 삭제해도 되는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후,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보류하는 걸로 의견 통합 (민경완 위원)

## 7. 심 사 내 용

### ○ 민경환 위원의 수정안 발의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 수정안 발의 사유

- 제정조례안 제3조 1항 조문중 “또는 법시행령 제29조 4항에서 정하는 도로(이하 “도로”라고 한다)”까지 포함할 경우 일반도로면 토지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어 본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수정안 표결 결과

-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

## 8. 심 사 결 과

“수정안 가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①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부.
- ②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 끝.